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

1. 관련

- 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50, 2020.8.19)
- 나. 「서울·인천·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7, 2020.8.19)
- 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5, 2020.8.19)
- 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4, 2020.8.19)
- 마.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9, 2020.8.1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8월 19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에, **2020년 8.19.(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는 서울·인천·경기 소재 지역의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붙임1 참조>
 -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써 아래의 경우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나. 서울·인천·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대상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교회
 - 주요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집합제한)

-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2 참조 >

다.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 **쏘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및 방역수칙 준수

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

○ 시·도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마.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붙임 3 참조 >

○ 대상시설 : 고위험시설로 既 지정한 13종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붙임 1.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방안 1부.

2.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방안 1부.

3.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방안 1부. 끝.

교 육 부 장



수신자 각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서울경기인천소재 대학, 국가
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소속단체

주무관 **이우정**

행정사무관 **김진욱**

코로나19대응학 교상황총괄과장 전결 08/19
최화식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465** 접수 (서울)평화의전당 관리운영팀-510 (2020.08.19)
(2020.08.19.)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어진동)

전화 044-203-7147 전송 044-203-7023 / dldnwjd0120@korea.kr / 비공개(5)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①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②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애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써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사 례 >

- ▲ 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
- ▲ 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

- (예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3 적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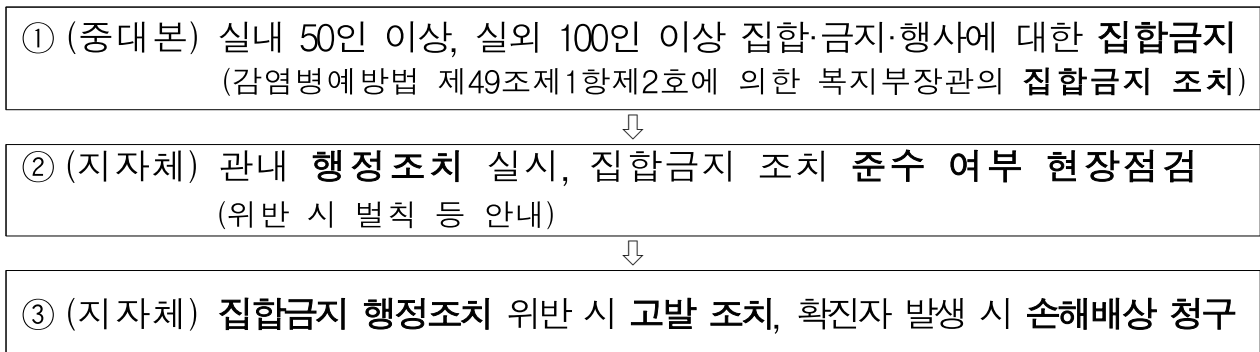
-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추진내용 및 절차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집합·모임·행사의 범위, 인원 기준, 예외,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3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다만,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19.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교회

2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에 따라 시행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조치 중 교회에 대한 내용은 본 조치로 대체

3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참고) 철저히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④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참고)을 모두 준수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 추가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시설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